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3
----------	-----

2022. 2. 1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 28.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 나. 상정의결
 -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2. 2.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은승일)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조, 제3조)
 - 회의 및 위원회의 직원(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안 제6조~제8조)
 - 운영세칙(안 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세부내용 별첨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 예산조치 : 필요 시 예비비 또는 예산 변경 사용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2. 1. 5. ~ 2022. 1. 25.) 결과 : 경미한 문구 수정
 - 제2조제4항 :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 자문을 하기 위하여
 - 제2조제5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 제외사유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상위법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¹⁾에 따른 위임조례로 그동안 구청장직

1)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인수위원회가 법적근거 없이 미흡하게 운영하던 사무인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그간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수지원단 구성 및 운영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 준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매뉴얼’을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지방자치법」 제119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제68조까지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임.

- ‘구청정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새롭게 출발하는 당선인이 구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 구청장직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당선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새로운 구정의 안정적 출발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적인 임시조직이라 하겠음.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3)에 따른 규정과 차이가 있는 바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에서는 당선인은 인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수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을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4)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치법」 제105조⁵⁾제7항 및 제9항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원의 임기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위원회 존속기간의 종료로 해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회의)제2항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바 과반수가 아닌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위원회의 직원)에서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강남구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자체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제1항에서는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원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이고 인수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 지출이 예상되는 바 이는 바람직한 예산지출은 아닌 것으로 보임.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것인지, 위원 개인자격으로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한편,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서는 <예시>⁶⁾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7조(수당)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위원은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비 지급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인수위원으로 강남구 소속 공무원도 임명될 수도 있는 바 공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됨.

- 안 제8조(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에서는 백서(白書)를 발간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이 누락되어 있는 바 백서는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6) <예시>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8조 중 백서의 공개 방법이 모호하여 이를 구체화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됨.
- 국민들이 누구나 백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서 파일 등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53호

제안일자 : 2022.2.1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며, 활동 결과보고 공개 방법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특정 성별 과반 제한 예외 단서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 인수위원회 운영 및 협조 사항 관련 조문 수정(안 제6조제1항)
-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공개 방법을 구 홈페이지 등으로 명시(안 제8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는 필요시” 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로 하고, “제출 등” 을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로 하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공개” 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53
----------	-----

제출연월일 : 2022. 1. 28.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2조, 제3조)

다. 회의 및 위원회의 직원 (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안 제6조~제8조)

마. 운영세칙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부내용 별첨

(1)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예비비 또는 예산 변경 사용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 5. ~ 1.25.) 결과 : 경미한 문구 수정

- 제2조제4항 :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 자문을 하기 위하여

- 제2조제5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제외사유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상위법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

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수위원회 운영비

- 인수위원회 위원 및 직원 수당, 여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
- 백서 제작, 소모품비
- 인수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7급 이은희 (02-3423-5452)

별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

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